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18. . .	
연월일	(제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이낙연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8. . .

1. 의결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안착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정 게재시 투자자에 통지 의무화(안 제68조제5항제13의4호)

변경된 중요 게재사항을 투자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시 청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청약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나.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안 제68조제5항제13의5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투자자만 온

라인소액증권에 청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청약을 받도록 함.

다. 발행 요건 달성시 통지(안 제68조제5항제13의6호)

투자자가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요건(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달성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발행 요건 달성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정정 게재 시 투자자 확인 여부 재확인(안 제118조의9제2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권의 발행조건 등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한도 확대(안 제118조의15제1항)

창업·중소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현행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함.

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게재사항 확대(안 제118조의16제1항)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내리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발행인이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 회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이해관계를 추가함.

사. 최소청약기간 도입(안 제118조의16제3항)

투자자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청약기간을 최소 1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18.1.0 ~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항에 제13호의4부터 제13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4. 법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정정 게재 전 해당 증권의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투자자에게 정정 게재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행위

13의5.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에 따른 투자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을 통해 증권을 청약하려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이해하였는지의 여부를 질문을 통해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확인한 결과 투자자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가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는 행위

13의6.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제118조의16제5항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청약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

제118조의9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법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른 정정 기재 (제1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모집가액의 증액에 관한 사항 및 나목에 따른 사항의 정정 기재는 제외한다.)를 함에 따라 증권의 발행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법 제117조의7제4항에 따라 투자자가 정정 기재한 증권의 발행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제1항의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8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7억원”을 각각 “15억원”으로 한다.
제118조의16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증권 발행가액의 산정 방법 및 근거

제118조의16제1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제118조의16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증권이 청약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13의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행인 게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제5항제13의6호, 제118조의9제2항, 제118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이후 모집을 개시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부터 적용한다.

<신 설>

14. (생 략)

제118조의9(증권의 청약) ① (생 략)

<신 설>

자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가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는 행위

13의6.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제118조의16제5항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청약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14.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9(증권의 청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법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른 정정 기재(제1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증액에 관한 사항 및 나목에 따른 사항의 정정 기재는 제외한다.)를 함에 따라 증권발행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법 제117조의7제4항에 따라 투자자가 정정 기재한 증권발행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② (생략)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발행한도) ① 법 제11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금액과 해당 모집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금액 각각의 합계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2. 제11조의1항에 따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

② (생략)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

의 여부를 제1항의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발행한도) ① -----

-----.

1. -----

----- 15억 원 -----
2. -----

----- 15억원 -----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① -----

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
는 경우에는 그 모집 개시 전까
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발행조건에 관한 사
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라. (생략)

<신설>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
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
항.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
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신설>

라. (생략)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증권 발행가액의 산정 방
법 및 근거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118조의15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
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에 한한다.)

마. (현행 라목과 같음)

<신 설>

3.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신 설>

1. ~ 3. (생 략)

④ ~ ⑥ (생 략)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증권의 청약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할 것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자산운용과	
연 락 처	02-2100-2668